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사직무에 민간이관범죄 이첩 등 처리 명시 등〉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22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군사경찰의 수사직무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 이첩과정’ 명시	2
2. 부대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7
3. 국방부장관 등의 지휘·감독권 내용 신설 및 서면에 의한 지휘· 감독의 원칙 명시	10
4. 군사경찰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독립성 보장 명시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과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타 수사기관과 같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사경찰 부대의 장만을 지휘·감독하게 함.

또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시 서면에 의한 지휘·감독을 명문화하고 일선 수사단에 대한 독립보장 원칙과 이의제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1. 군사경찰의 수사직무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 이첩과정’ 명시

□ 현행법에는 군사경찰의 직무범위 중 수사직무의 내용으로 범죄의 ‘수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수사직무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u>수사</u>	3. ----- ----- ---- <u>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u>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 군사경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는 「군사법원법」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있음.

구분	「군사법원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 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개념	제43조(군사법경찰관) 1. 군사경찰과 장교 등 및 범죄수사업무 관장 부대 군무원 2.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교 등 및 군무원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 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1)에서는 군사상

- 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운행·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 등 및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²⁾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등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구분	「군사법원법」 제43조 (군사법경찰관)	「군사법원법」 제44조 (군사법경찰관 직무범위)
제1호	군사경찰과 장교 등 및 범죄수사업무 관장 부대 군무원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제2호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교 등 및 군무원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 암호 부정 사용,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 군사경찰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제1항³⁾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군사법원법」 제228조제3항⁴⁾에 따라 그 사건을 대검찰청,

-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 2) 「군사법원법」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 3)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4) 「군사법원법」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민간으로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민간으로 이관해야 하는 범죄에 대해 군사경찰의 이첩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수사가 재판권이 소재한 적절한 소관기관에서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군사법원법」 제22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 필요성 및 법 조문의 경제성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일반적으로 수사는 ‘(내사)-수사의 개시-수사의 진행-수사의 종료’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법원법」에서 한 절(제228조~제288조)을 할당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의 여러 가지 내용 중 ‘민간이관범죄 이첩’ 부분만을 특별히 강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동일한 취지의 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도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2. 부대장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 개정안은 군사경찰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부대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4. ~ 8. (생략) ② ~ ⑤ (생략) <u><신설></u>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군사경찰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

□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 등, 범죄의 정보 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등에 있어서 군사경찰 부대장의 지휘·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상명하복의 신속한 명령하달 체계가 필요한 군조직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군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군사경찰 부대장의 지휘·감독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소속 군사경찰은 직무수행에 있어 부대장의 명령에 불복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서 군사경찰에게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군사법원법」 제40조제2항⁵⁾에서도 군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여 지휘·감독의 적법성 및 정당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나, 군사경찰의 이의제기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이의제기권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5) 「군사법원법」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범죄수사를 포함하여 규정된 모든 직무에 대해 군사경찰의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있어 부대장의 지휘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점, 「군사법원법」 제40조제2항의 이의제기권은 군검찰사무(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등)에 한정되어 군사경찰의 다양한 직무범위와는 상당히 다른 점 및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6)에 따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시 공정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는 범위는 ‘수사’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제기권의 보장범위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군사법원법」 제43조7)에 의하면 군사경찰 외 군사안보지원 부대 소속 부대원도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수사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동일한 수사직무를 수행함에도 군사안보지원 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의 이의제기권은 보장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7)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3. 삭제
 4. 검찰수사관

3. 국방부장관 등의 지휘·감독권 내용 신설 및 서면에 의한

지휘·감독의 원칙 명시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
- 또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서면(목적, 내용, 이유, 지휘·감독자 서명날인)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라도 24시간 이내에 지휘·감독한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현행	개정안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군사경찰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설>	<u>제5조의2(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u>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u>제5조의3(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u>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u>제5조의4(지휘·감독의 원칙)</u> ① 제5조의2와 제5조의3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그 목적과 내용, 이유가 기재되고 지휘·감독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현행	개정안
	<u>한다. 다만,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지휘·감독한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군사경찰이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및 군사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의 직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⁸⁾에 따라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⁹⁾에 따라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감독

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자의 역할을 수행함.

-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직무는 해석상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직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직속 하급자 및 소속 기관만을 지휘·감독하게 하려는 것으로, 지휘·감독 체계가 ‘상급자→중급자→하급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휘·감독이 되게 한다는 점과 예외적으로 상급자에서 하급자로 곧바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져 중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내용이 다를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른 군검찰사무의 지휘·감독의 경우에도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각 군 참모총장의 검찰사무 지휘·감독)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소속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한편 개정안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서면(목적, 내용, 이유, 지휘·감독자 서명 날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면에 의한 지휘·감독은 목적·내용·이유가 기재되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자의 책임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군사법원법」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직속 하급자 및 소속 기관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검찰사무(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등)와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는 상당히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군사경찰의 직무범위는 경호·테러

대응, 군사상 교통질서 유지, 기타 군기강 확립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권이 제한된다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명령하달체계가 필요한 군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휘권이 제약받을 우려가 있음.

□ 둘째,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¹⁰⁾에 의하면 군사경찰 외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부대원도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수사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동일한 수사직무를 수행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체계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개정안의 서면에 의한 지휘·감독은 구체적인 사건에 해당되면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의 모든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휘·감독의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나타나므로 특별히 합리성이나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무로 한정하는 방안(예: 범죄사건 수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방부훈령인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에서는 수사지휘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0) 「군사법원법」 제43조(군사법경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한다.

1. 「군인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병과 중 수사 및 교정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병과(이하 “군사경찰과”라 한다)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2.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중 군사보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대로서 국군조직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부대(이하 “군사안보지원부대”라 한다)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하는 사람
3. 삭제
4. 검찰수사관

「군사경찰범죄수사규칙」(국방부훈령)

제14조(군사경찰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수사부서(대)의 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범죄수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며, 체계적인 수사 인력·장비·시설·예산 운영 및 지도·교양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사지휘) ① 제14조에 명시된 자가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체포·구속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사항
3.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
4. 사건 이첩 등 책임수사부대 변경에 관한 사항
5. 변사자 검시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넷째, 개정안은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등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예외적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외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군사경찰의 범죄수사 등에 대한 독립성 보장 명시

- 개정안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군사경찰 부대장으로 하여금 군사경찰이 군사범죄의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5조의4(지휘·감독의 원칙) ① 제5조의2와 제5조의3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그 목적과 내용, 이유가 기재되고 지휘·감독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지휘·감독한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u>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u>

□ 군사경찰이 군사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의 직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군사경찰 부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상명하복의 신속한 명령하달 체계가 필요한 군조직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군사경찰은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부여된 권한의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바,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만 근거하여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¹¹⁾에서도 군사경찰 부대장으로 하여금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군사범죄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1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군사경찰의 지휘·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수사직무 수행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격상시키면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독립성 보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군사경찰의 공정한 수사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독립성을 법률에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4항까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군사경찰 부대장의 지휘자·감독자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개정안과 같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함께 규정하게 되면 ‘지휘감독권’과 ‘독립성’ 상호 간 적용범위의 한계가 불분명하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군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군사법원법」¹²⁾에서도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면서 독립성 보장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³⁾.

문 의 처

02)6788-5308

12) 「군사법원법」 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3) 군검사의 수사·공판 진행시 독립성 보장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9호,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